2011년도 제5회 이사회 의사록

❑ 일 시 : 2011. 7. 29 (금) 16:30~18: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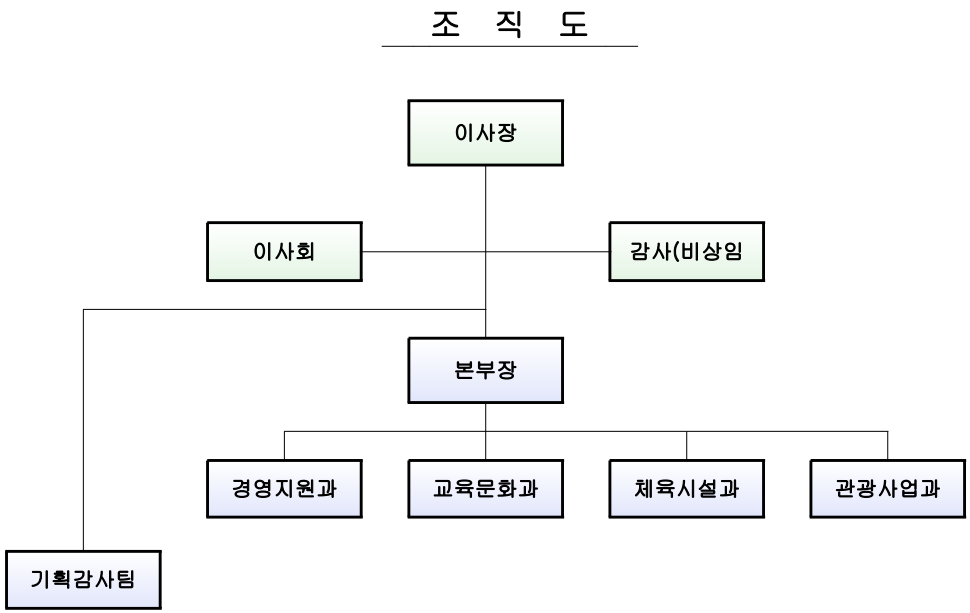
❑ 장 소 :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회의실

❑ 참석인원 : 5명 (이사장, 오명화 , 채희군, 홍운기, 정택진) - 감사 불참

❑ 심의내용

의안번호	건 명	심의결과	비고
제2011 -12호 (정관)	□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 1. 제10조(임원추천위원회) 제3항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"자동해지"된다.을 **『자동해체』된다. 로 수정**	**수정의결**	포천시장 승인요청

의안번호	건 명	심의결과	비고
제2011 -12호 (정관)	2. 제12조(조직 및 정원) ①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기구 및 정원은 각각 “별표1”, “별표2”와 같다.를 **①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 로 수정**하며 **『별표 1』『별표 2』삭제.**	**수정의결**	포천시장 승인요청
제2011-13호 (직제규정)	**□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개정안** 1. 제8조(직원) ② 일반직의 직급은 5급 내지 9급으로 한다.를 **② 일반직의 직급은 5급 내지 10급으로 한다. 로 수정** ④ 전임계약직은 가급 내지 라급으로 한다.를 **④ 전임계약직은 나급 내지 라급으로 한다. 로 수정** 2. 제10조(직위) 제9조 제1항의 각 과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.를 **① 제9조 제1항의 각 과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.** **② 기획감사팀장은 6급으로 보한다. 로 수정**	**수정의결**	포천시장 승인요청

의안번호	건 명	심의결과	비고
제2011 -13호 (직제규정)	3. (별표1)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	**수정의결**	포천시장 승인요청

<table>
<tr><th>의안번호</th><th>건 명</th><th>심의결과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
<td>제2011 -13호
(직제규정)</td>
<td>
4. (별표2)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정 원 표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직급별</th><th>인 원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96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임 원</td><td>소 계</td><td>2</td><td></td></tr>
<tr><td>이사장</td><td>1</td><td></td></tr>
<tr><td>본부장</td><td>1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일반직</td><td>소 계</td><td>60</td><td></td></tr>
<tr><td>5급</td><td>4</td><td>6급 과장 가능</td></tr>
<tr><td>6급</td><td>10</td><td></td></tr>
<tr><td>7급</td><td>15</td><td></td></tr>
<tr><td>8급</td><td>21</td><td></td></tr>
<tr><td>9급</td><td>8</td><td></td></tr>
<tr><td>10급</td><td>2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기능직</td><td>소 계</td><td>28</td><td></td></tr>
<tr><td>8급</td><td>2</td><td></td></tr>
<tr><td>9급</td><td>6</td><td></td></tr>
<tr><td>10급</td><td>13</td><td></td></tr>
<tr><td>11급</td><td>7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전임
계약직</td><td>소 계</td><td>6</td><td></td></tr>
<tr><td>나급</td><td>1</td><td></td></tr>
<tr><td>다급</td><td>1</td><td></td></tr>
<tr><td>라급</td><td>4</td><td></td></tr>
</table>
5. 신・구조문 대비표 제14조 (체육시설과)로 수정
6. 신・구조문 대비표 정원표중 전임계약직 수정
</td>
<td>수정의결</td>
<td>포천시장 승인요청</td>
</tr>
</table>

의안번호	건 명	심의결과	비고
제2011 -14호 (인사규정)	□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개정안 1. 제37조(전직) ② 이사장은 직제개편을 위하여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전직 할 수 있다.를 **삭제하고 부칙에 삽입.** 2. 제3항 및 제4항, 제5항을 **제2항 및 제3항, 제4항으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『업무직』으로 수정.** 3. 제41조(승진순위) ①직원의 승진은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하되,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.를 **① 직원의 승진은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승진 임용한다. 로 수정.** ③ 제2항에 의한 절차·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를 **③ 전항에 의한 절차·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 로 수정.**	**수정의결**	포천시장 승인요청

의안번호	건 명	심의결과	비고
제2011 -14호 (인사규정)	4. 부칙 ② (일반직 전직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에 따라 규정 시행전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제4조의 직종 및 직급과 경력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. (단, 규정 시행 후 임용예정자는 2011. 8. 31일까지 임용된 자에 한 한다.) 1. 기능직8급인 자는 일반직8급으로 하고 이전 경력을 일반직8급 경력으로 계상한다. 2. 기능직9급인 자는 일반직9급으로 하고 이전 경력을 일반직9급 경력으로 계상한다. ③ (기능직 전직에 대한 경과조치) 직제개편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전직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다. 1. 무기계약직인 자 중 임용일 기준으로 2년이 초과 한 자는 일반직 10급 및 기능직 10 급으로 임용한다. 2. 무기계약직인 자 중 임용일 기준으로 2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기능직 11급으로 하고 이전 경력을 기능직 11급 경력으로 계상한다. 3. 무기계약직은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업무직 관리규정에서 폐지한다.	수정의결	포천시장 승인요청

의안번호	건 명	심의결과	비고
제2011 -15호 (보수규정)	□ 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개정안 제5조(초임호봉의 획정) ② 업무직(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자)에서 ----------초임호봉시 1호봉부터 시작한다.에서 **『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자』삭제.**	**수정의결**	포천시장 승인요청

의안번호	건 명	심의결과	비고
제2011 -16호 (연봉제규정)	□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개정안	원안의결	
제2011 -17호 (명예(조기) 퇴직수당 지급규정)	□ 포천시시설관리공단 명예(조기)퇴직수당 지급규정 개정안	원안의결	